

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8-21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재기재하여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임조례 취지에 맞게 목적규정 정비함(안 제2조)

-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조례의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함.

나.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함(안 제2조)

- 근거법령을 인용하고,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자구 수정함.

다. 법령 재기재사항인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비함(안 제3조)

- 법령에 없는 부위원장 선출방법 규정: 위원 중에서 호선

라. 위원회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바로잡음(안 제5조)

-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미리 지명한 아동위원이 대행
⇒ 위원이 대행

마.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함(안 제5조의2)

바. 수당규정 삭제함(안 제10조)

- 위원회 출석수당 지급근거: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」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8. 1. 24.~2. 13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 정비현황(제3조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심으로)

○ 미정비(3): 고성군, 남해군, 밀양시

(7)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사례 반영함.

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 “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”를 “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
2.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
3.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부위원장)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아동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
2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
제8조 중 “두되,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”를 “두고, 간사는
군수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<u>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기능) <u>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</u> <u>2.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</u> <u>3.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제3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복지정책과장, 문화관광과장,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</u> <u>2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</u> <u>3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</u> 	<p>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<u>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기능) <u>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</u> <u>2. 장애인복지 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</u> <u>3.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사항</u> <p>제3조(부위원장) <u>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

풍부한 사람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아동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제8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위원-----

제5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- 1.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
- 2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

제8조(간사) -----
-----두고, 간사는
군수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

<삭 제>